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6,809,079	13,104,272
일반회계		407,711,855	12,231,356
특별회계		29,097,224	872,917
	공기업특별회계	12,255,027	367,651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255,027	367,651
	기타특별회계	16,842,197	505,2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6,370	14,291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64,541	34,9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91,133	125,734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283,493	8,50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726,660	321,8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5,37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